자연재난 피해주민
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

정부지원 종합 안내서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content

1 사유시설 피해 지원(재난지원금) 1

2 의연금 지원 2

3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지원 3

4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4

5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6

❶ 국세 납세유예 / ❷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7

❸ 국민연금 납부예외 / ❹ 상하수도요금 감면 / ❺ 재해복구자금 융자 8

❻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11

❼ 농기계수리 지원 / 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/ ❾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12

❿ 건강보험료 경감 / ⓫ 전기요금 감면 / ⓬ 통신요금 감면 13

⓭ 도시가스요금 감면 / ⓮ 지역난방요금 감면 / ⓯ 예비군 훈련 면제 14

6 기타 지원 17

❶ 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 / 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18

❸ 재해손실 공제 / ❹ 과태료 징수유예 / ❺ 전파사용료 면제 19

❻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/ ❼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/ ❽ TV수신료 면제 20

7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2

1 사유시설 피해 지원 (재난지원금)

지원 대상

- **인명피해**(사망·실종, 부상)를 입은 경우
- **주택피해**(전파·유실, 반파, 침수, 소파)를 입은 경우
- **생계피해**(주생계수단이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)를 입은 경우

* 주생계수단 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
지원 내용

구 분	대 상		단위	지원금액 (만원)	비 고
인명 피해	사망·실종		명	1,000	·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·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
	부상	장해등급 1~7급	명	500	
		장해등급 8~14급	명	250	
주택 피해	전파·유실		동	1,300	
	반파		동	650	
	침수, 소파		동	100	·소파의 경우 지진에 한함
생계 피해	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		1인 가구	44	·총 소유량의 50%이상 피해를 입은 농·어가 및 주택 전파(유실),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 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·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27,500원씩 추가 지급
			2인 가구	75	
			3인 가구	97	
			4인 가구	119	
			5인 가구	141	
			6인 가구	163	

신청/문의

- **인명피해 : 주소지 시·군·구 재난관리부서**
- **주택 및 생계피해 : 피해 발생지 시·군·구 담당부서**
- **어선피해 : 선적지 시·군·구 담당부서**

※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자연재난 피해신고서」 제출(시·군·구/읍·면·동)

2 의연금 지원

지원 내용

구 분	대 상		의연금(만원) * 상한액	비 고
인명 피해	사망·실종자의 유족		1,000	·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·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
	부상	장해등급 1~7급	500	
		장해등급 8~14급	250	
주택 피해	전파·유실		500	·세대당 지급, 실거주 대상 ·소파의 경우 지진에 한함
	반파		250	
	침수, 소파		100	
생계 피해	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 50%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		100	·세대당 지급

※ 배분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의연금 지원 금액 결정

신청/문의

•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

3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- **주택피해**(전파·유실, 반파, 침수, 소파)를 입은 경우

주택피해 세부지급 기준

-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·유실·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해구호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
- 지자체장이 취사 또는 주거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

지원 내용

- **응급구호세트** : 남·여 개인별 1세트
- **취사구호세트** : 1세대 1세트
  ※ 1세대는 4인 기준으로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도 가능
- **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상황** 등을 감안하여 생활필수품(분유세트, 기저귀, 모기약 등) 지급 가능

신청/문의

- **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**

재난피해자 심리 지원

4

지원 내용

- **(대상)**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

  ※ 유가족, 동행인 등 재난목격자, 수습복구활동 참여자 등 재난 간접피해자 포함

- **(내용)**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굴, 진료기관에 연계*하여 정신적·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  * 정신·신경 의학적 치료분야는 보건·의료분야로 인계

신청 / 문의

- **지역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**

  ※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음

참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

연번	센터명	연락처	주 소
1	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2-2181-3107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긴급구호종합센터 재난안전교육팀
2	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1-801-407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보건안전교육팀
3	대구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3-550-7117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
4	인천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2-810-1341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
5	광주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2-570-7725	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1층 구호복지팀
6	대전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2-220-0133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·세종지사
7	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2-210-9521	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
8	세종특별자치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2-220-0134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·세종지사
9	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1-230-1624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
10	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3-253-1295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RCY본부
11	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3-262-7114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RCY본부
12	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1-640-4845	층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구호복지팀
13	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3-280-5838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구호복지팀
14	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1-272-2807	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220번길 7-3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목포봉사관
15	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4-830-0746	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구호봉사팀
16	경상남도 재난심리지원센터	055-278-2725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구호복지팀
17	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4-758-3506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

※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(044-205-5342) 및 시·도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

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5

원스톱 서비스란?

- **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시**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피해신고만으로 '재난지원금'과 '세제·융자 등 간접지원'까지 통합·일괄 지원

지원 내용

일반재난지역

① 국세 납세유예 ②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③ 국민연금 납부예외
④ 상하수도요금 감면 ⑤ 복구자금 융자 ⑥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⑦ 농기계수리 지원 ⑧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⑨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

특별재난지역

⑩ 건강보험료 경감 ⑪ 전기요금 감면 ⑫ 통신요금 감면
⑬ 도시가스요금 감면 ⑭ 지역난방요금 감면 ⑮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

지원 절차

피해발생 → 피해신고 (피해자 ▶ 시군구) → 피해확인 (시군구)

→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(시군구) → 피해자 간접지원 (관계기관 ▶ 피해자)

5 ❶ 국세 납세유예 ❷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

지원내용

❶ 국세 납세유예

- **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**
  - ▸**(신고·기한연장)** 신고·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·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)까지 연장
  - ▸**(징수유예)**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)까지 연장
  - ▸**(체납처분 유예)**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)까지 유예

- **신청 / 문의 : 지역 관할 세무서**

❷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

- **재난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워 납기를 연장하거나,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**
  - ▸**(납세유예)**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로 최장 1년(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)까지 납부기한 연장
  - ▸**(체납처분 유예)**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장 1년(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)까지 유예
  - ▸**(감면)** 멸실·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,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
- **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세무부서**

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③
상하수도요금 감면 ④
재해복구자금 융자 ⑤

지원내용

③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- 최장 12개월 보험료 납부 면제

  ※ 면제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음

- 신청 / 문의 : 관할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

④ 상하수도요금 감면

-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원, 전액면제 등 시·군·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

  ※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

- 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상하수도부서

⑤ 재해복구자금 융자

소관부처	피해시설	취급은행	상환기간	이율(고정금리)
농림축산식품부	농경지, 농작물등	농협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해양수산부	어선, 수산생물 등	수협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산림청	산림작물, 시설 등	산림조합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국토교통부	주택(전파,유실,반파)	우리은행	3년 거치 17년 상환	연리 1.5%
중소벤처기업부	소상공인	일반은행	2년 거치 3년 상환	연리 2.0%
	중소기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2년 거치 3년 상환	연리 1.9%

- 신청 / 문의 : 피해시설별 융자 취급은행

참고1 재해 농가·어가 경영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•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·어가

지원 내용

소관부처	지 원 대 상	상환조건	
		상환기간	이율
농림축산식품부	(재해대책경영자금)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	1년간 (1년 연장 가능) * 다만,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까지 연장가능	연 1.8% 또는 변동금리
해양수산부	피해금액 20% 이내, 영어자금 소요액 20% 이내 (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)	1년 (최대 2년 연장 가능)	연 1.8% 또는 변동금리

신청 / 문의

• 농가대출 : 농협, 어가대출 : 수협

참고2 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- **재난·재해로 직접 피해*를 입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**

  *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대해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에 한함

융자 조건

- **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**
  - ▸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- ▸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
  - ▸대출금리 : 연 1.9% 고정금리(매년변동)
  - ▸**신청/문의 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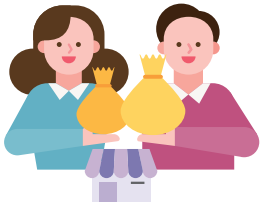

- **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**
  - ▸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- ▸대출한도 : 7천만원
  - ▸대출금리 : 연 2.0% 고정금리(매년변동)

  ※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, 수수료 0.5%)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수수료 0.1%

  - ▸**신청/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**

  * 순수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

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•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 지급

피해구분		재해위로금 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
인명 피해	사망	사망 또는 실종	500
	부상	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	30
주택 피해	※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(실종)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		
	전 파	기둥·벽체·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500
	반 파	기둥·벽체·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250
	침 수	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	50
	※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빈집,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		
기타 재산 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~80 등급인 경우	50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~100등급인 경우	30
공동 이용 시설 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~80 등급인 경우	500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~90등급인 경우	250

※ 인명·주택 및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인명·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

신청 / 문의

• 국가보훈처 지역지청

농기계수리 지원 ❼
지적측량수수료 감면 ❽
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❾

지원내용

❼ 농기계수리 지원

-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자
  - ▸민간자율 지원
- 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농업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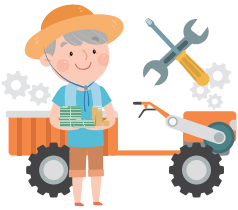

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-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시 수수료 50% 감면
  ※ 재난 발생일로 2년이내
- 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건축부서

❾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

-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
  - ▸60일내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현역병(사회복무요원 포함) 입영(소집)일자 연기
- 신청 / 문의 : 지방병무청
  ※ 연기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,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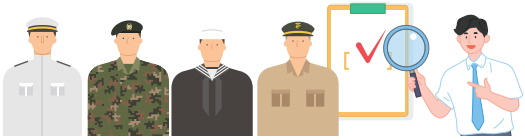

5

⑩ 건강보험료 경감
⑪ 전기요금 감면
⑫ 통신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⑩ 건강보험료 경감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
- 인적·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6개월 경감(하나만 발생시 3개월)

  ※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～50% 경감(월보험료 최대 50% 초과할 수 없음)
- 신청 /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/ 고객센터 ☎1577-1000

⑪ 전기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전기요금 감면 등

◇ 멸실된 건축물(주택 등) : 1개월분 전기요금 100% 면제
◇ 파손 및 침수 건축물 :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% 경감(단, 주택용은 100% 면제)
◇ 전기요금 납기연장 : 멸실, 파손 및 침수된 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
◇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까지 요금 감면(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)
◇ 건축물 멸실,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
◇ 피해복구장소 및 대피장소 긴급전력 무상설치 등 전력설비 지원

- 신청 / 문의 : 한국전력 관할 지사, 한전 사이버지점(http://cyber.kepco.co.kr) / 고객센터 ☎(국번없이)123

⑫ 통신료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무선통신(SKT, KT, LGU+) 요금 감면
-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,500원

  ※ 감면 내용(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)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- 신청 / 문의 : 고객센터 ☎(SKT) 080-011-6000, ☎(KT) 1588-0010, 114, ☎(LGU+) 1544-0010, 114

도시가스요금 감면 ⑬
지역난방요금 감면 ⑭
예비군 훈련 면제 ⑮

지원내용

⑬ 도시가스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
  -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주택 1,680원
  -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, 반파·침수 6,200원
- 신청 / 문의 : 지역 도시가스사업소

⑭ 지역난방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기계실(열사용시설)의 멸실·파손·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
- 열공급을 받지 못한 해당월의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

  *지역난방업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신청 / 문의 : 지역 난방업체 / 고객센터 ☎1688-2488

⑮ 예비군 훈련 면제

-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

  ※ 단, "피해를 입은 예비군"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
- 당해연도의 예비군훈련(연도 이월훈련 제외) 면제(국방부, 병무청)
- 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예비군부대

별첨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

<table>
<tr><th>지원항목</th><th>지원내용</th><th>처리기관</th><th>비고(신청방법)</th></tr>
<tr><td>국세 납세 유예</td><td>징수유예, 납기연장, 체납처분유예
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등 최장 9개월 연장
* 체납처분은 최장 1년 유예
*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장 2년 유예</td><td>지방국세청·세무서</td><td>별도신청 불필요
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</td></tr>
<tr><td>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</td><td>감면, 면제, 납기유예 등
- 재산세 등 일괄감면 및 납기연장(6개월~최대1년)
*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최장 2년 유예
- 대체취득시 취·등록세 면제</td><td>시·군·구 세무담당부서</td><td>별도신청 불필요
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</td></tr>
<tr><td>국민연금 납부예외</td><td>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</td><td>국민연금공단 (지사)</td><td>별도신청 불필요
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</td></tr>
<tr><td>상하수도 요금 감면</td><td>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
- 피해발생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, 피해발생월 수도요금 50% 감면 등
*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 다름</td><td>시·군·구 상하수도과</td><td>별도신청 불필요
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</td></tr>
<tr><td>복구자금 융자</td><td><table>
<tr><th>피해시설</th><th>취급은행</th><th>상환기간</th><th>이율</th></tr>
<tr><td>농경지, 농작물 등</td><td>농협</td><td>5년거치 10년상환</td><td>연리 1.5%</td></tr>
<tr><td>어선, 수산생물 등</td><td>수협</td><td>5년거치 10년상환</td><td>연리 1.5%</td></tr>
<tr><td>산림작물, 시설 등</td><td>산림조합</td><td>5년거치 10년상환</td><td>연리 1.5%</td></tr>
<tr><td>주택</td><td>우리은행</td><td>3년거치 17년상환</td><td>연리 1.5%</td></tr>
<tr><td>소상공인</td><td>일반은행</td><td>2년거치 3년상환</td><td>연리 2.0%</td></tr>
<tr><td>중소기업</td><td>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</td><td>2년거치 3년상환</td><td>연리 1.9%</td></tr>
</table></td><td>시·군·구 주택·농업·어업·산림·경제부서/ 지방중기청/ 금융기관</td><td>피해사실확인서 발급 (시군구 재난부서) 후 취급은행에 신청</td></tr>
<tr><td>보훈대상 위로금 지원</td><td>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
- 사망·주택전파 : 500만원
- 재산 1,000만원 초과 피해 시 50만원 등
* 원스톱으로 지원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</td><td>지방보훈관서</td><td>별도신청 불필요
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</td></tr>
<tr><td>농기계 수리지원</td><td>농기계 수리 필요한 경우 유·무상 수리
* 민간자율지원</td><td>시·군·구 농업부서</td><td>시군구 농업부서를 통해 신청</td></tr>
</table>

지원항목	지원내용	처리기관	비고(신청방법)
지적측량 수수료 감면	**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** - 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	한국국토 정보공사	측량신청 시 지원
병역의무 이행일 연기	**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**	지방병무청	피해사실확인서 발급 (시군구 재난부서) 후 지방병무청에 연기원서 제출 *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
건강보험료 경감 특별	**재난등급(소상공인은 피해금액)에 따라 건강 보험료 30~50% 경감(3개월)** * 인적·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	국민건강 보험공단	별도신청 불필요 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
전기요금 감면 특별	**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감면** - (멸실)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- (침수)1개월분의 50% 면제	한국전력공사	별도신청 불필요 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
통신요금 감면 특별	**세대당 1회선 1개월, 최대 12,500원 (기본원칙)** * 통신사 상황에 따라 협의·조정될 수 있음	SKT·KT·LGU+	별도신청 불필요 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
도시가스요금 감면 특별	**주택피해 유형별(전파, 반파, 침수) 1개월분 정액 감면 지원** -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 -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, 반파·침수 6,200원	일반도시가스 사업자/ 한국가스공사	별도신청 불필요 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
지역난방요금 감면 특별	**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** - 기계실 멸실·파손·침수로 사용 불가한 경우 - 열공급 중지 해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지원 * 지역난방업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	한국지역 난방공사	별도신청 불필요 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
예비군 훈련 면제 특별	**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**	병무청	별도신청 불필요 (피해신고만으로 지원)

※ 특별 : 특별재난지역에만 지원

6 기타 지원

기타 지원 사항

- **원스톱 서비스 외**에 간접지원 항목으로 별도의 피해신고 없이 시행기관에서 직접 일괄 지원 또는 피해사실 확인 후 개인이 서면으로 신청

지원 내용

일반재난지역

① 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
③ 재해손실 공제
④ 과태료 징수유예

특별재난지역

⑤ 전파사용료 면제
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
⑦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
⑧ TV수신료 면제

지원 절차

- **해당 시·군·구에 피해신고, 간접지원 시행 기관에 신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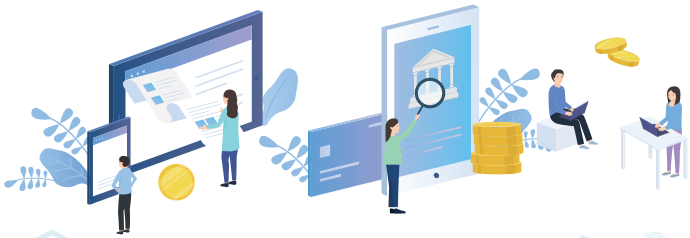

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 ①
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②

지원 내용

①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-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구 분	공유재산 및 물품	국유재산	국유림
허가·대부기간	•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 연장	-	-
사용료·대부료	•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·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	•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	•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- 신청 / 문의 : 사용 · 대부허가 기관

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

- 자연재난으로인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
- 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민원부서

6

❸ 재해손실 공제
❹ 과태료 징수유예
❺ 전파사용료 면제

지원내용

❸ 재해손실 공제

- 자연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
- 신청 / 문의 : 관할 세무서

❹ 과태료 징수유예

-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*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

  *사법상·소송법상 의무 위반, 법률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제외,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,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
- 신청 / 문의 : 과태료 부과 행정청 * 담당자 직권으로도 가능

❺ 전파사용료 면제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

  ※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제외
- 전파사용료 6개월간 면제(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속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)

  ※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일괄 면제 처리(별도 신청 불필요)

농지보전부담금 면제 ❻
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❼
TV수신료 면제 ❽

지원내용

❻ 농지보전부담금 면제

-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*

  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

- 복구를 위하여 신축·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

  ※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

- 신청 / 문의 : 시·군·구 농업부서

❼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금 수수료·대출이자 등 6개월 면제

◇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
- 대한적십자사,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 무료 배송

◇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

◇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

- 신청 / 문의 : 지역 우체국

❽ TV수신료 면제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수상기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

  * 피해범위,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수신료 면제대상 및 기간 등 지정

- 신청 / 문의 : 한국방송공사 / 콜센터 ☎ 1588-1801

별첨 기타 간접지원 항목

지원항목	지원내용	처리기관	비고(신청방법)
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	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 만큼 사용료·대부료 감면	시·군·구 허가기관	피해사실확인서 발급 (시군구 재난부서) 후 허가기관에 신청
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	재난으로 피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	시·군·구 민원부서	발급 시 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
재해손실 공제	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	관할 세무서	피해사실확인서 발급 (시군구 재난부서)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
과태료 징수유예	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기	과태료 부과기관	피해사실확인서 발급 (시군구 재난부서) 후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신청 ※ 직권으로도 가능
전파사용료 면제 특별	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(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제외) -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	소관지역 전파관리소	별도신청 불필요 (시행기관 일괄 처리)
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특별	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- 복구를 위하여 신축·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* 부지 총면적이 660㎡이하인 경우만 해당	시·군·구 농업부서	허가신청 시 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
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특별	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금수수료·대출이자 등 6개월 면제	우체국	피해사실확인서 발급 (시군구 재난부서) 후 우체국에 신청
TV수신료 면제 특별	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TV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*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	한국방송공사	별도신청 불필요 (시행기관 일괄 처리)

※ 특별 : 특별재난지역에만 지원

FAQ (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) 7

Q1 사유시설 피해신고 기간은?

A

-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.
- 장기간 여행·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재난 피해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Q2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?

A

- 시설피해는 시설물 소재지 해당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제출하고,
-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.

Q3 피해신고 제외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?

A

- 상가 및 상품, 가재도구, 농기계, 자동차 등 동산과
- 무허가시설,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, 수산증·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.

※ 주택은 건축 허가·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이고, 무허가 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

MEMO

MEMO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책자의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